

「2024년도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사업자 추가모집 공고

경기도는 공공성이 큰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중장기적 발전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2024년도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의 사업자를 추가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11.

경기도지사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공동체 활성화, 공유·협업 기반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 매입자금 융자 지원

목적사업	사업내용 예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아, 교육, 의료, 돌봄, 주거, 문화, 생활환경, 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활동
공유사업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
협업사업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유공간 조성 등을 통해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활동

- 사업기간 : 2024. 3. ~ 12. (자금 소진 시까지)
- 사업비 : 20억원 내외 * '24년 총 사업비 40억원 중 1차 융자지원금 제외
- 추진방법 : 신청 → 심사(1차 경기도 → 2차 융자은행) → 융자결정 · 실행
- 융자은행 : 신한은행(수원역지점)

2. 지원조건

- 융자한도 : 개소당 최대 10억원 이내
 - 매매계약서상 매입자금의 최대 90% 이내, 컨소시엄은 신청업체 융자금액 합산

- 융자금리 : 2.0% 고정금리
- 융자기간 : 10년(4년거치 6년균분) 또는 15년(5년거치 10년 균분) 중 선택
- 자금용도 : 영업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 기계기구/설비 매입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용도 기재된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및 "도"가 인정하는 건축물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시설로서 공부와 현황이 동일해야 함. ○ 단순 토지 매입, 건물의 신/증설 등 건축은 제외
기계기구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운영을 위해 신규 매입하는 기계기구/설비로서 보증기관 보증서 및 해당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공장저당법에 의해 토지, 건물과 그에 설치된 기계기구에 대해 일괄로 담보취득이 가능한 기계기구/설비

- 융자조건
 - 융자 후 자산매각, 기업부도·폐업,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 사회적경제조직 지위 상실 등 발생 시 융자회수

3. 지원대상(신청자격)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경기도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법인) 또는 해당하는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1.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2.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마을기업**
 3.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4.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5.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10 제1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은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 가능**
- * 사회적기업이면서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소셜벤처기업, 자활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의 지위로 신청

○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매매계약한 사업자
 - * 2024년 1월 1일에 체결된 매매계약부터 가능하며 신규용자 신청만 가능(2023년 12월 31일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불가함), 매입대금을 완납했거나 대환의 경우는 불가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치향락 관련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주류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일반유통주점 등(공고문 별표1 참고)
- 휴·폐업중인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국세, 지방세(도세·시군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징수유예는 체납의 범위에서 제외 가능)
- 정책지원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
-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외 자금으로 신청한 경우
- 「경기도 부동산 상가 매입비」 자금으로 기 용자를 받은 경우
 - * 컨소시엄 참여인 경우 구성원 중 1개 기업이라도 기 용자를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및 「2024년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에 따른 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에 11개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실을 사전 확약서에 제출하지 않았으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사업자 선정 후 확약서 제출내용과 달리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과거 법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취소 · 보조금 반환,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응자취급 지침 부동산 임대 시 처리기준(공고문 별표2)에 따라 응자환수 대상인 경우
 - 기타 응자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감점 대상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및 「2024년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에 따른 11개 법 위반 사실 확인 기업인 경우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 위반 사실 확인 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단, 사전 확약서에 법위반 사실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컨소시엄 참여인 경우 구성원 중 1개 기업이라도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적용

경기도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기준 적용법률(11개)

-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⑥ 폐기물관리법
-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4. 추진절차 및 1차 심사 평가기준

○ 추진절차



○ 경기도 1차 심사 평가기준

- 심사방법 : 발표심사(사업계획 PT 발표 및 질의응답)
- 심사항목 : 사업계획, 기업역량,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항목	평가사항	배점
사업계획 (30)	(1) 사업내용이 협동자산화 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가?	10
	(2) 사업추진을 위한 충분한 준비과정이 있었는가?	5
	(3)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15
	(4) [컨소시엄만 해당] 참여기업 간 협력관계 유지, 분쟁 해결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가?	가중치
기업역량 (40)	(1) 기업의 미션과 비전이 명확하고 비즈니스모델이 경쟁력과 혁신성이 있는가?	15
	(2) 기업이 안정적이고 건실하게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가?	15
	(3)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조달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10
공공성 (30)	(1) 기업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는가?	7
	(2) 사업운영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및 연대활동이 활발한가?	7
	(3) 협동자산화 사업을 위해 지역사회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 및 협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가?	6
	(4) 협동자산화 지원 융자사업의 지원을 받을 경우, 기업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와 성과의 확대 가능성이 큰가?	10

- 선정방법 : 심사위원 심사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하고 합산 평균해 6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기업역량 평가를 위해 재무 및 자금조달계획을 1차 심사하나, 최종 융자 가능여부는 협약 은행의 심사에 따라 결정됨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①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신청서류 접수 >

- 접수기간 : 2024. 10. 2.(수) ~ 10. 8.(화) 16:00 까지
 - * 신청서류 접수 전 응자은행(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 금융상담 가능
- 접수방법 : 전자우편(peanut84@gg.go.kr)으로 신청서류 제출
 - 10월 8일 16시 발송분까지 유효하며 전자우편 발송 후 사업담당자에게 전화 확인 필수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과 Tel. 031-8008-3421)

- 제출서류 : 붙임 1 경기도 서류제출 목록
 - 신청서 등 구비서류는 순서대로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로 만들어 제출 (파일명 : 기업명.pdf)
 - 대면심사 발표자료는 별도의 서식이 없으며 15분 이내 길이로 작성하여 제출 (파일명 : 기업명_발표자료)

< ③ 융자결정 신청서류 접수 >

- 신청대상 : 1차 심사에 선정된 기업
- 접수기관 : 신한은행 수원역지점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신한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름(붙임 2 참조)

6. 기타 유의사항

- 매매계약서 상 매입자금의 10%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등은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련 소요비용의 자기자금을 마련해야 함
- 공모와 관련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미비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해야 하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융자은행의 2차 심사에 의해 융자 가부 및 금액이 결정되므로 신청한 지원금 보다 지원규모가 축소될 수 있으며, 지원금이 축소되나 동일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기자금 부담 비용이 확대됨을 유의
 - 융자은행의 2차 심사 시 담보 이외 기타사항은 각자 보증기관 등 상담을 통해 조달하여야 함
- ※ 경기도 신청서류 접수 전 융자은행(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 금융상담 가능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선정된 기업은 3년간 경기도 전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 사업자 선정 전후 및 융자실행 후에도 법 위반기업 적발 시 융자신청 취소 및 융자금 회수
- 부동산(주택) 구입 자금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및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등의 기준을 따름

- 심사 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하며, 심사 결과와 관련한 평가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사업 신청 문의 : 경기도 사회혁신기획과 (☎ 031-8008-3421)

◆ 응자 신청/상담 : 신한은행 수원역지점 (☎ 031-253-7875, 253-7852)

(경기도) 서류제출 목록

제출서류	비고
(1) 공모 신청 제출서류	
1-1. 「2024년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응자신청서	
1-2. 법인소개서	
1-3. 컨소시엄 현황	
2.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응자 동의서	
3.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4-1.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활용 동의서	
4-2.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3.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여부 확약서	
5. 대표자 본인 신분증 사본	
6.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7.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8. 정관 사본 1부.	
9. 재무제표(3개년) 1부.	
10.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각 1부.	
11. 사회적경제조직 증빙 서류(지정·인증·인가·신고확인증 등) 사본 1부.	
12. 부동산(장비등) 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 부동산 매매계약은 공신력 있는 기관(법원, 공공기관, 공인중개사 등)을 통한 계약만 인정 ※ 단,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인 경우, 매매계약 가능 확인서(물건지 주소, 금액, 건축물 용도, 연면적 등 표기, 공인중개사 확인 必)를 사전 제출한 뒤 선정 심사 후 매매계약서 제출 가능	
13. 부동산(장비등) 견적서 1부.	
14.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	필요시
15. 경기도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유의사항 확인서	
(2) 대면심사 발표 PT 자료	별도서식 없음

* 제출시 순서별 PDF 1개화일(**기업.pdf)로 제출
/ 발표 PT자료는 별도 파일로 제출(**기업.pdf 또는 **기업.ppt)

※ 유의사항

- (제출서류 1~4)의 경우 지정된 신청 서식에만 작성하며, 그 외 양식을 사용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출서류 6~7)의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제출서류 10)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서명 및 날인은 기업 대표 명의로 진행하며, 서명·날인 누락 시 접수 불가
- (1-1번~15번) 서류를 순서대로 스캔하여 PDF화일(기업명.pdf)로 제출
- 컨소시엄의 경우 모든 참여 기업이 (제출서류 4-1 ~ 11, 15)을 각각 제출
- * (은행) 제출 필요시 일부서류 복사 사용 가능

(신한은행) 융자결정신청 서류제출 목록

* 1차 심사 선정기업 중 융자결정신청 희망기업

구 분	내 용
대출약정을 위한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사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차입 관련 이사회 의사록(주주총회 의사록) - 기타 개별기업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류
기업심사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최근 3개년) - 사업계획서 - 대표자 이력서 - 임직원 명부, 유급근로자 명부 - 매출액 확인 자료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 기타 개별기업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류
기타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보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 기타 개별기업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류

[별표1]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융자 지원 제외 업종

업 종	해 당 업 종
제조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주류, 담배 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주류,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음식점 및 주점업	일반(무도)유통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기획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홍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경주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기타 갤러리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개인 서비스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종

부동산 임대 시 처리기준

*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동산 임대의 경우

1 일부를 임대하였을 경우

무상과 유상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내용 확인

- 매입상가 건축물 연면적 대비 임대해준 면적 비율이 “기업자부담”비율 초과 시 응자금환수

※ 기업자부담비율 = $1 - [\text{도자금 응자잔액} \div \text{응자매입시설가액}]$ (응자시점기준, VAT제외)

☞ 기업이 원금 상환하여 해당시설에 대한 도자금 차지비중이 감소되는 만큼 해당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여력 인정

☞ 처리기준일자는 기업 소명기간까지이고 해당 기간 내 “기업자부담 비율”을 준수할 경우 지원 유지

환수처리예시

(예시) 부동산매입 10억원인 상가 (총연면적 1,000m²)를 위해 8억원을 지원해 준 기업이 해당 상가 부분임대(임대면적 210m²) 주고 있는 경우 (남아있는 도자금 대출잔액 8억원)

☞ 기업자부담 비율 (20%) = $1 - [\text{도자금 응자잔액 } 8\text{억원} \div \text{매입가액 } 10\text{억원}]$

☞ 부분임대 비율 (21%) = $\text{임대면적 } 210\text{m}^2 \div \text{건축물 총연면적 } 1,000\text{m}^2$

⇒ (결과) 부분임대비율 21%로 기업자부담비율 20% 초과된 바 환수처리

2 전부 임대하였을 경우

무상 및 유상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응자금 환수

☞ 어떠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해당시설을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정책목적에 맞게 집행되지 않음에 따라 응자액 환수

3 기타

단, 협동조합(연합회)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임대시 제외

☞ 조합원 및 회원은 소속 사회적경제기업회원으로 3년경과자에 한해서 가능

* 시설/장비는 임대 불가